

2019년도 제2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2. 4.(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박재화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2건(안건번호 제2019-158624호~158673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8624호~158673호(92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이 심의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로서 □□□, ●●●●●●●●, ○○○○, ◎◎◎◎, ◆◆◆, ☆☆☆☆☆ 6개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관해 삭제, 전송중단이 요구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은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C 위원 : 본 심의에 상정된 50안건은 92개 저작물의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채증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때,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 법에 의해 시정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함.
- D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방송과 영상 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 예컨대 (방송) 쓱니다 천리마켓(2019), (방송) 모두의 거짓말(2019), (영화) 제미니 맨(2019), (영화) 두번할까요(2019)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방송 및 영상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

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9년 제27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13.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박재화